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. 10. 13 선고 2015가단1995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의령남씨지평공파종중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10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C 도로 10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6.20㎡ 지상 가설건축물(포장마차)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이호인

별지